

인적용역소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정재연**

〈요 약〉

영세한 인적용역소득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소득세 환급 논란으로 인해 최근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적용역소득 과세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 있어 자주 다툼이 있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의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세한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일용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와 유사한 방식을 적용하거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과 유사한 방식으로 일정금액 이하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지급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생략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수입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인적용역사업자에 계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의 초과율을 폐지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경비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하여 기타소득금액 계산 방식(기타소득 필요경비율 60% 적용)을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례금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인적용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6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하고,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중 비슷한 업종의 기준경비율을 고려하여 20% 정도 수준에서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과 일시적인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유사하게 소득금액의 구간별로 필요경비율을 차등하거나 또는 필요경비율에 대한 필요경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인적용역, 사업소득, 기타소득,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 본 논문은 2017년도 강원대학교 대학회계 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하였음.

** 강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jyjung@kangwon.ac.kr

논문접수일 2022년 12월 5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23일

I. 서 론

정부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재난지원금 등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는 “실시간 소득과악 제도(RTI, Real Time Information)”를 2022년 7월부터 시행하였다. “실시간 소득과악 제도”는 기존에 연·반기·분기로 수집하던 소득자료(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매월로 단축함으로써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는 제도이다.¹⁾ “실시간 소득과악 제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인적용역사업자의 복지혜택은 확대되었으나,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이 노출되면서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영세한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2년 9월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소득자 225만 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귀속) 찾아가지 못한 환급금 2,744억 원에 대한 기한 후 환급신고를 안내한 바 있다.²⁾ 한편 영세소득자들의 소득세 환급과 관련해, 최근에는 세무플랫폼 업체들이 고객의 세무신고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주로 인적용역소득자를 중심으로 소득세 환급을 받게 해주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어 세무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삼짍삼’이라는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사회 등에서 불법세무대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결정이 나면서 한국세무사회 등 세무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³⁾ 국세청이 인적용역소득자들에게 기한후 환급신고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세무플랫폼 업체들이 납세자들에게 소득세 환급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영세한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포함한 소득세 과세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최근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이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적용역소득 과세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인적용역소득 과세제도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Ⅲ장에서는 인적용역소득 과세현황 및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제Ⅳ장에서는 인적용역소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1)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2. “실시간 소득과악(RTI) 시행 1년, 복지세정의 한 축으로”

2) 국세청 보도자료. 2022. “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드립니다.”

3) 국세신문. 2022. “국세청의 환급금 찾아주기 ... ‘삼짍삼’ 사태와 원천징수 문제”

II. 인적용역소득 과세제도 및 선행연구 검토

1.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세 과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그가 가진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소득세법은 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지만,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및 관련 판례(서울행정법원 2008.11.26. 선고 2008구합14548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의미하고, 사업소득은 그러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영리목적성을 갖고 독립적,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때 영리목적성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사업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독립성은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고용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계속·반복성은 동종의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이러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⁴⁾

가. 사업소득으로 과세

(1) 원천징수 및 종합과세

사업자,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⁵⁾ 인적용역사업자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연말정산 방식 이외의 종합신고 방식을 적용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원천징수를 하였던이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따라서 확정 신고 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적으면 납부세액이 발생되고 결정세액 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환급세액이 발생된다.⁶⁾

4) 유지선·정지선. 2016. “인적용역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계정보연구 제34권 제3호 : 462.

5)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제128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호

6) 박정우·정래용. 2015.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6권 제6호 : 116.

(2) 사업소득금액 계산

인적용역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인적용역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장부를 비치·기장한 인적용역사업자는 장부와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인적용역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⁷⁾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2,400만원에 미달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단순경비율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한다. 단순경비율법 적용대상자는 다음의 산식과 같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아래 산식에서 주요경비란 매입비용,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인건비를 말하며,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만 공제한다.⁸⁾

추계소득금액 : $\text{Min}[\text{①}, \text{②}]$

①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②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 : $\text{수입금액} - \text{주요경비} - (\text{수입금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른 업종의 사업자는 단일한 경비율을 적용하나 인적용역사업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 4,000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율보다 낮은 초과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기본율과 초과율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취지는 수입금액이 4,000만원까지는 고정비용도 있고 수입금액에 비례하는 가변비용도 있으나 수입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적인 고정비용은 없고 가변비용도 4,000만원까지보다 더 적게 발생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나 반드시 인적용역사업자에게만 이러한 논리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업종의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논리임에도 오직 인적용역사업자에게만 초과율을 적용하고 있다⁹⁾.

7) 소득세법 제1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9) 김남중·정래용. 2014.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세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 290-291.

한편 기준경비율법 적용대상자인 인적용역사업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아래 산식에서 배율은 복식부기의무자일 경우 3.4배(간편장부대상자일 경우는 2.8배)를 적용하며,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을 계산한다.¹⁰⁾

추계소득금액 : $\text{Min}[\text{①}, \text{②}]$

① 단순경비율 및 배율 적용 소득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times \text{배율}$

②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 : $\text{수입금액} - \text{주요경비} - (\text{수입금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3)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연말정산 사업소득¹¹⁾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을 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¹²⁾

나. 기타소득으로 과세

(1) 원천징수와 분리과세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¹³⁾과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¹⁴⁾는 기타소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11) 간편장부대상자(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음료품배달원이 받는 사업소득을 말한다.

12) 소득세법 제144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 제4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4조의2

1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쇄(印稅)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득으로 과세한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¹⁵⁾ 기타소득은 종합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무조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타소득(복권당첨금 등)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분리과세할 수 있다.¹⁶⁾ 한편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 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¹⁷⁾

(2) 기타소득금액 계산

인적용역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인적용역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의 60%(이하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라 함)¹⁸⁾와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¹⁹⁾ 이러한 기타소득은 고정적 원천이 없는 소득이라는 점과 납세자의 납세 행정력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총수입금액의 상당 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별도의 장부 관리 의무를 지우지 않는 것이다.²⁰⁾

2. 선행연구의 검토

신현걸·정재연(2014)은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을 추계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14)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15)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6호

16)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17)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

18)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서 2018년 4월 1일부터는 100분의 70, 2019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60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였다.

19)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의2호

20) 유지선·정지선. 2016. “인적용역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계정보연구 제34권 제3호 : 462.

점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작가의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다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2,400만원 이상이 되는 구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어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기 시작하는 구간, 그리고 기준경비율에 1/2을 곱한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이 되는 구간에서 조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턱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적용역소득자는 다른 유형의 사업소득자에 비해 수입금액이 대부분 명확하게 노출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라도 기준경비율에 1/2을 곱하지 않고 당초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7,500만원 이상이 되는 구간에서 발생하는 문턱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 인적용역소득자는 타인의 고용이나 별도의 사업장 없이 본인이 직접 용역을 제공하며, 그러한 용역은 대부분 지적 용역이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명시적인 경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사업자가 기장을 하고 싶어도 기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적용역에 대한 가장 불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의 구간에서 발생하는 문턱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데, 그 이유는 채고자산의 매입비용, 임차료 및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기장하면 이를 모두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순경비율 보다 낮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적용역사업자는 본인이 직접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채고자산의 매입비용이 있을 수 없으며, 타인을 고용하지도 않고 사업장도 없기때문에 임차료나 인건비 등 주요경비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라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면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의 구간에서 발생하는 문턱효과도 제거할 수 있다.

김남중·정래용(2014)은 상당수 인적용역사업자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이거나 근로와 유사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자와 같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거나 상용근로자와 같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절차를 별도로 이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인적용역사업자는 세법을 비롯하여 여러 부분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어 근로자나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에 비하여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 착안하여 대다수 영세한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다른 소득이 없이 인적용역 사업 소득 수입금액만 연간 1천만원 이하인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실효세율 근접한 1%로 원천징수하고 선택적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다수 인적용역사업자는 동일한 수입금액의 근로자에 비해 소득세를 과다납부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근로자이거나 근로와 유사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같이 특별공제항목의 소득공제(세액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적용역사업자는 장부나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사업상경비와 가사경비가 구분이 불분명하며 인적용역사업자의 업종의 특성상 사업상 경비가 거의 없고 특히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와 같은 주요경비는 있을 수 없어 다른 업종의 사업자에 비해 소득세 신고 시 필

요경비를 거의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소득세를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수입금액을 현행 직전연도 2,4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해연도 수입금액 중 4,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도 단순경비율 중 초과율 적용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자와 같이 기본율로 일원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하여 간소하게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반면 다른 인적용역사업자는 반드시 번거로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다른 인적용역사업자가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에 비해 신고절차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따라서 다른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해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수입금액을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와 같은 7,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와 형평을 맞추거나 최소한 도·소매업종과 같은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해연도 수입금액 중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단순경비율 중 초과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최소한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와 형평을 위해 7,5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초과율을 적용하거나 초과율 자체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박정우·정래용(2015)은 인적용역사업자를 사실상 근로소득자 또는 일용근로자와 구분이 어려운 1인 개인사업자로서 영세한 일용근로자적인 특성을 가진 의제일용근로직 인적용역사업자와 직업운동가나 작가 또는 연예인과 같이 정상적인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일정한 교육·훈련시간이 소요되고 창업비 성격의 투입비용이 발생하는 인적용역사업자인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로 구분하고, 각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의제일용근로직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기타소득 과세방법을 원용하여 정액이 아닌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과세표준에 대해 저율로 원천징수하고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 또는 1%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가 장래에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이러한 증빙을 미리 수집해 둔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총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일종의 창업비 상각액으로 간주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가 가사 및 생계관련 비용과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총수입금액과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성격의 필요경비 이외에 일종의 생활비성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특정한 기간에 평생소득을 집중적으로 벌어들이는 특성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직업군별로 차별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상대적인 저율과세 적용방법은 퇴직소득세 계산 시 적용하는 연분연승법을 원용할 수 있다.

유지선·정지선(2016)은 외국의 입법례 검토를 통해 인적용역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은 인적용역소득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양자 간 세 부담 격차가 커 조세회피 유인이 발생한다. 외국의 입법례 검토 결과, 미국·영국·일본 등의 주요국은 소득 구분에 따른 세 부담 차이가 없거나, 세 부담의 차

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그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세 부담의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타소득의 획일적인 필요경비 공제에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공제율을 80%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정액의 특별공제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필요경비 규정을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인적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필요경비 공제 방법 및 소득계산 방법으로 인해 인적용역사업자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국가는 특정 인적용역소득을 평생소득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일정 기간의 평균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허용하고 있고, 과거에 발생한 비용도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으며, 가사경비와 혼재된 사업관련 필요경비의 소득공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적용역소득의 과세시 평생소득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고소득 인적용역제공자에 대한 1인 법인의 설립을 의무화하거나 일정기간의 평균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통해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 일정기간 내에 발생한 비용 중 소득 창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비용은 증빙을 갖추는 경우에 한해 창업비로 계상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정액상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법상 사업관련 가사경비의 공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시행령 또는 집행기준 등에 구체적인 경비항목 및 안분기준의 예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는 주로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반면, 본 연구는 인적용역사업자의 사업소득뿐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일시적인 인적용역소득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인적용역소득 과세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III. 인적용역소득 과세 현황 및 과세제도의 문제점

1. 인적용역소득 과세 현황

가. 인적용역사업자 업종별 현황

인적용역사업자의 2020년 귀속 업종별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전체 인원은 2011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증가(3,277,898명 → 7,043,969명)하였으며, 이는 기타 자영업이 5배 이상 대폭 증가(560,793명 → 3,449,875명)한 것에 기인한다. 1인당 연간지급액의 평균은 1,543만원으로서 병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인적용역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8,000만원)에 미달하는 영세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표 1〉 인적용역 사업자 업종별 현황²¹⁾

(단위 : 명, 백만원)

업종구분	인원	인원 비율	연간 지급금액	1인당 연간지급금액	소득세 (원천징수분)
합계	7,043,969	100%	108,701,787	15.432	3,265,123
저술가	81,905	1.16%	773,241	9.441	23,139
화가관련	19,687	0.28%	360,282	18.301	10,795
작곡가	21,290	0.30%	251,548	11.815	7,507
배우	17,977	0.26%	583,417	32.454	17,481
모델	9,206	0.13%	88,551	9.619	2,653
가수	8,068	0.11%	261,747	32.443	7,836
성악가	8,291	0.12%	53,303	6.429	1,597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33,065	0.47%	308,387	9.327	9,248
연예보조	56,493	0.80%	646,677	11.447	19,378
자문·고문	97,526	1.38%	1,289,750	13.225	38,683
바둑기사	493	0.01%	10,245	20.781	307
꽃꽂이교사	1,197	0.02%	4,715	3.939	141
학원강사	386,827	5.49%	4,880,179	12.616	146,341
직업운동가	43,339	0.62%	1,007,080	23.237	41,137
봉사료수취자	24,613	0.35%	312,146	12.682	15,272
보험설계	114,322	1.62%	7,205,658	63.029	216,061
음료배달	4,692	0.07%	63,976	13.635	1,911
방판·외판	320,282	4.55%	3,649,732	11.395	109,209
기타 자영업	3,449,875	48.98%	36,254,409	10.509	1,086,687
다단계판매	980,267	13.92%	1,481,428	1.511	43,669
기타 모집수당	713,746	10.13%	10,677,684	14.960	319,886
간병인	52,356	0.74%	733,899	14.017	22,012
대리운전	79,052	1.12%	217,905	2.756	5,258
캐디	2,912	0.04%	8,106	2.784	243
목욕관리사	730	0.01%	8,589	11.766	258
행사도우미	99,621	1.41%	398,159	3.997	11,936
심부름용역	25,040	0.36%	143,222	5.720	4,270
퀵서비스	100,831	1.43%	654,655	6.493	13,612
물품배달	196,753	2.79%	1,056,718	5.371	30,993
병의원	93,508	1.33%	35,316,370	377.683	1,057,602
기타	5	0.00%	9	1.800	1

21) 국세청. 2021. 『국세통계연보』

나. 인적용역사업자 업종코드 신설

국세청은 2021년 9월, 고용보험 확대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최초로 제공한 이후, 매월 400만 건 이상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일용근로자를 비롯하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고용보험 확대 적용 대상(14개 업종²²⁾)인 인적용역사업자 및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가 해당된다. 2021년 7월 이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 인적용역사업자 67만 명이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하였으며, 세법상 업종코드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인적용역사업자 유형과 일치되도록 총 9개 직종에 대한 업종코드를 다음 <표 2>와 같이 신설하였다.²³⁾

<표 2> 인적용역사업자 신설 업종코드

신설일	코드 번호	업 종
'21.7.1.	940920	학습지방문강사
	940921	교육교구방문강사
	940922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40923	대출모집인
	940924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40925	방과후강사
'22.7.1.	940926	소프트웨어프리랜서
	940927	관광통역안내사
	940928	어린이통학버스기사

2. 인적용역소득 과세의 문제점

가. 소득 구분의 문제점

(1)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종전 80%에서 현행 60%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인적용역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경우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경우의 세 부담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으며, 연간 수입금액이 작을 경우에는 오히려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고

22)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소프트웨어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캐디

23)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2. “실시간 소득과약(RTI) 시행 1년, 복지세정의 한 축으로”

액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소득 구분에 따른 세 부담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에 다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현행 법문에서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소득세법 집행기준에서는 다음 <표 3>과 같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²⁴⁾

<표 3>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구분	사업소득	기타소득
개념	•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에 소득세법 제21조에서 열거하는 소득
판단기준	• 독립성 :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고용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경영하는 것 • 계속·반복성 : 동종의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 영리목적성 : 사업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	•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판례에서는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²⁵⁾ 최근 판례는, 원고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주일 중 3일 이상 자문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자문용역 제공에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자문용역비는 계약 종료 시 1회 정산하여 지급되었으나, 그 대금은 원고가 용역을 제공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누적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소득을 얻기 위한 활동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용역비가 1회 지급되었다고 해서 소득에 계속성·반복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²⁶⁾

이와 같이 사실관계에 근거한 판단은 주관적이고 모호할 수 밖에 없다. 가령 계속성의 기준이 며칠 또는 몇 개월인지, 반복성의 기준이 몇 회인지, 영리목적성의 기준금액이 얼마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에 대한 판단은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이 판단

24)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10

25)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26) 서울행정법원 2021.09.14. 선고 2020구합83874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납세자는 소득 신고 시 소득 유형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²⁷⁾

(2) 기타소득 내에서의 소득 구분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은 ①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②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③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 및 ④ 사례금 등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과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적용되는 반면,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와 사례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적용역소득이 기타소득 중 어떤 항목으로 구분되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되어 역시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에 소득 구분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판례를 살펴보면, 전문적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이 공동소유자들을 대리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소유자들로부터 받은 거액의 자문료를 사업소득이 아닌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판결한 바 있으며,²⁸⁾ 원고가 기밀을 누설하지 않고, 이익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은 데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액을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다.²⁹⁾

한편 소득세법 집행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을 제시하고 있다.³⁰⁾

- ①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 중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 ②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대한 소득구분은 알선행위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느냐, 일시적으로 행하여지느냐 등 사업성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③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알선행위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 ④ 거주자가 수출을 알선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대가가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7) 유지선·정지선, 2016. “인적용역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계정보연구 제34권 제3호 : 468.

28) 서울고등법원 2022.07.14. 선고 2022누30227

29) 수원지방법원 2021.12.09. 선고 2021구합62844

30)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4

또한 소득세법 집행기준에서는 사례금에 다음의 것을 포함하도록 예시하고 있다.³¹⁾

- ①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 ②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 ③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판례에서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³²⁾

이와 같이 소득세법 집행기준에서 알선수수료와 사례금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알선수수료와 사례금도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납세자는 알선수수료와 사례금을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일시적인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기타소득 중 사례금 또는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와 일시적인 인적용역소득의 소득 구분에 대한 납세자의 심판청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³³⁾

나. 과세 방법의 문제점

(1) 인적용역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환급 문제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7년~’21년) 동안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당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소득자가 225만 명에 이르며, 업종별로는 방문판매원 등 38만 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 명, 학원강사 등 19만 명, 행사도우미 등 8만 명, 배달라이더 등 8만 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이 127만 명에 이르고 있다.³⁴⁾

국세청이 발표한 것처럼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인적용역소득자들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적공제 등을 적용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없거나 그 금액이 미미해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거의 없기때문에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득세신고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국세청이 비용을 들어가면서 영세한 인적용역소득자들에게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를 하거나,

31)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5

32) 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33) 조심-2021-서-5474, 2022.05.09. 외 다수

34) 국세청 보도자료. 2022. “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드립니다.”

‘삼짍삼’과 같은 세무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득세 환급금을 핑계로 과도하게 세무대리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으로 인적용역소득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³⁵⁾

(2) 인적용역사업자의 추계신고 시 불이익

인적용역사업자는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장부로 신고하는 때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도·소매업은 3억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고 추계로 신고하는 때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도·소매업은 6,000만원) 기준경비율대상자에 해당한다. 즉, 세법상 의무인 복식부기 및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판정 수입금액 기준이 도·소매업 등 다른 업종에 비하여 더 낮아 동일한 수입금액의 다른 업종 사업자에 비해 더 무거운 세법상 의무를 진다.³⁶⁾

또한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규모와 무관하게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인적용역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의 경우에만 수입금액 4,000만원 이하의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적용하고 4,000만원 초과분은 기본율보다 낮은 초과율을 적용한다.

IV. 인적용역소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1.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의 명확화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에 사업소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³⁷⁾는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과 저술·강연 등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전속계약금과 저술·강연 등의 인적용역의 소득 구분에 대한 다툼이

35) 국세신문. 2022. “국세청의 환급금 찾아주기 … ‘삼짍삼’ 사태와 원천징수 문제”

36) 김남중·정래용.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세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 301-302.

37)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③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계속되자 사업소득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 있어 과거에 다툼이 있었던 인적용역소득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추가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자문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³⁸⁾이나 주식의 매매와 관련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³⁹⁾등의 요지를 파악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에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 집행기준⁴⁰⁾에서는 다음 <표 4>와 같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바, 최근의 판례를 참고하여 더 많은 유형의 사례를 추가하여 소득 구분에 참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심판례에서, 쟁점용역은 순수한 노무용역이라기보다는 부동산 개발 관련 제반 업무에 대한 컨설팅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쟁점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기타소득(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⁴¹⁾하는 등 다수의 심판례가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사례

구분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구 용역비	교수 등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대가로 수령하는 연구비	교수 등이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대학으로부터 받는 연구비
문예창작 소득	문필·예술·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얻은 소득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경영자문 소득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목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얻는 소득

38) 대법원 2014.07.10. 선고 2014두5187판결

39) 대법원 2012.02.23. 선고 2011두26961판결

40)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10

41) 조심-2021-서-6720, 2022.07.20.

2.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개선

영세한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에서 2% 또는 1%로 낮추자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소득세 환급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영세한 인적용역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포기를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천징수세율을 낮추는 것 보다는 영세한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일용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1일 15만원)와 유사한 방식으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지급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 70%⁴²⁾, 인적공제 중 본인공제(1,500,000원)와 표준세액공제(70,000원)를 적용할 경우 면세점은 수입금액 8,888,888원이 된다. 연간 200일 정도 인적용역을 제공한다고 가정할 경우 1일 수입액은 44,444원($=8,888,888\text{원} \div 200\text{일}$)이 되며, 연간 150일 정도 인적용역을 제공한다고 가정할 경우 1일 수입액은 59,259원($=8,888,888\text{원} \div 150\text{일}$)이 된다.

계산내역		
수입금액		8,888,888원
필요경비(단순경비율 70%)	(-)	6,222,222원
본인공제	(-)	1,500,000원
과세표준(수입 - 경비 - 공제)		1,166,666원
산출세액(과세표준 $\times$ 6%)		70,000원
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	70,000원
총 결정세액		0원

다음으로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매 건별로 5만원 이하)과 유사한 방식으로 일정금액 이하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지급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생략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금액)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를 적용 기타소득은 125,000원 이하일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슷한 방식으로 단순경비율 70%를 가정할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66,666원($=50,000\text{원} \div 30\%$)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과세최저한을 적용할 수 있다.

42) 2021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대리운전기사 73.7, 골프장캐디 67.3, 행사도우미 68.1, 이사짐운반원 68.3 등 대부분 70% 내외에 해당한다.

3.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추계과세 개선

인적용역사업자는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데, 그 이유는 재고자산의 매입비용, 임차료 및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기장하면 이를 모두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순경비율 보다 낮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적용역사업자는 본인이 직접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매입비용이 있을 수 없으며, 타인을 고용하지도 않고 사업장도 없기 때문에 임차료나 인건비 등 주요경비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없다.⁴³⁾ 반면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보다 영세한 인적용역사업자들이 오히려 추계과세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먼저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기준경비율 적용기준을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에서 7,50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즉, 추계과세 시 인적용역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간편장부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인적용역사업자간의 과세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인적용역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초과율을 폐지함으로써 다른 업종의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요경비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하여 기타소득금액 계산 방식(기타소득 필요경비율 60% 적용)을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과도한 세 부담 감소를 완화하기 위하여 아래에서 제안하는 필요경비율 적용 필요경비의 상한금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4. 알선수수료와 사례금에 대한 필요경비율 적용 허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타소득 중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과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적용되는 반면,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와 사례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알선수수료와 사례금은 문예창작소득이나 인적용역에 비해 노력이 많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보아 필요경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알선수수료나 사례금도 상대적으로 작을 수는 있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의 노력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 부담을 지고 있다.

43) 신현걸·정재연. 2014.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추계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와회계저널 제15권 제5호 : 314.

먼저 사례금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인적용역과 동일한 수준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되, 아래에서 제안하는 필요경비율 적용 필요경비의 상한금액을 적용함으로써 과도한 경비 공제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알선수수료는 다른 인적용역소득과 성격이 다르고 상대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수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시적인 인적용역과 동일한 수준의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을 적용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신 사업소득 중 비슷한 업종의 기준경비율(사업재산권 중개 26.1, 무형재산권 중개 22.0, 부동산중개업 21.6)을 고려하여 20% 정도 수준에서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과세방식을 개선하게 되면 알선수수료와 사례금을 사업소득 또는 일시적인 인적용역으로 형식을 변경하여 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시도를 상당부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5.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적용에 대한 한도 신설

기타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우발적·일시적 소득에 대한 증명서류 구비 및 장부 기장 등 납세협력 노력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이 거액인 경우에도 한도 없이 필요경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형식을 변경하여 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시적인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정비례한다는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유사하게 소득금액의 구간별로 필요경비율을 차등하거나 또는 필요경비율에 대한 필요경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과 일시적인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수입금액 1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60%를 적용하고, 수입금액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하는 사례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일시적인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3억원을 수령한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1억 8천만원($=3\text{억원} - 1\text{억원} \times 60\% - 2\text{억원} \times 30\%$)이 되어 현행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1억 2천만원($=3\text{억원} - 3\text{억원} \times 60\%$)보다 크게 증가하게 된다.

또 다른 방법은 필요경비율 적용 필요경비의 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만일 필요경비율 적용 필요경비의 금액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한다면, 일시적인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3억원을 수령한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2억원($=3\text{억원} - \text{Min}[3\text{억원} \times 60\%, 1\text{억원}]$)이 된다.

V. 결 론

“실시간 소득과약 제도”를 통한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이 노출되면서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영세한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에 제기되고 있으며, 세무플랫폼 업체들이 고객의 세무신고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주로 인적용역소득자를 중심으로 소득세 환급을 받게 해주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어 세무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와 같이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문제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적용역소득 과세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 있어 자주 다툼이 있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 사례에 더 많은 유형을 추가하여 납세자들이 소득을 구분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세한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일용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1일 15만원)와 유사한 방식으로 인적용역 사업소득 지급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매 건별로 5만원 이하)과 유사한 방식으로 일정금액 이하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지급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생략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를 적용 기준수입금액을 2,400만원에서 7,50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인적용역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초과율을 폐지함으로써 다른 업종의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경비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하여 기타소득금액 계산 방식(기타소득 필요경비율 60% 적용)을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먼저 사례금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인적용역과 동일한 수준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되, 필요경비율 적용 필요경비의 상한금액을 적용함으로써 과도한 경비 공제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중 비슷한 업종의 기준경비율을 고려하여 20% 정도 수준에서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과 일시적인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유사하게 소득금액의 구간별로 필요경비율을 차등하거나 또는 필요경비율에 대한 필요경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인적용역사업자의 사업소득뿐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일시적인 인적용역소득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인적용역소득 과세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인적용역사업자와 일시적인 인적용역제공자의 실제 소득 신고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과세당국이 실제 입법하는 과정에서는 신고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원천징수세액 최소화를 위한 공제금액과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세신문. 2022. “국세청의 환급금 찾아주기 ... ‘삼짇삼’ 사태와 원천징수 문제”
- 국세청. 2021. 『국세통계연보』
- 국세청 보도자료. 2022. “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드립니다.”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2. “실시간 소득과약(RTI) 시행 1년, 복지세정의 한 축으로”
- 김남중·정래용. 2014.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세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 285-318.
- 박정우·정래용. 2015.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6권 제6호 : 109-133.
- 신현걸·정재연. 2014.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추계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와회계저널 제15권 제5호 : 293-317.
- 유지선·정지선. 2016. “인적용역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계정보연구 제34권 제3호 : 459-483.

Improvement of Taxation on the Personal Service Income*

Jae-Yeon Jeong**

〈Abstract〉

This study provides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taxation of personal service income.

First, the scope of business income should be clearly defined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Income Tax Act.

Second, the amount of withholding tax on small-scale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should be minimized.

Third, the amount of income based on the application of the simple expense rate to personal service business operators should be increased and the excess rate should be abolished.

Fourth,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plan to apply the same level of necessary expenses as for temporary personal services to reward, and to apply the necessary expenses at about 20% level for brokerage fees.

Fifth,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plan to differentiate the necessary expense rate for each section of the income amount for temporary personal service income or to set a limit on necessary expenses for the necessary expense ratio.

〈Key words〉 Personal Service Income, Business Income, Other Income, Necessary Expense, Simple Expense Rate, Standard Expense Rate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2017 Research Grant from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jjjung@kangwon.ac.kr